#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081 발의연월일: 2024. 10. 30.

발 의 자:김민전·김상훈·박충권

김대식 • 인요한 • 김용태

조경태 · 안철수 · 구자근

한지아 · 서일준 · 서천호

서지영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정부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 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음.

최근 「정부조직법」의 개정으로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는데, 이에 따라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 보 육사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 임.

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교육감 관장사무에 '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'을 추가하여 시·도 및 시·군·구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이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조, 제2조, 제20조 및 제35조 등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서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5079호),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교육재정교부 금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08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교육·과학·기술·체육"을 "교육·보육·과학·기술·체육"으로 한다.

제2조 중 "교육·과학·기술·체육"을 "교육·보육·과학·기술·체육"으로, "특별시·광역시 및 도"를 "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"로 한다.

제20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의2.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

제35조제1호 중 "공ㆍ사립"을 "어린이집, 공ㆍ사립"으로 한다.

## 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회계연도 중일 경우 해당 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장제5절의 제목 "교육·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"을 "교육·보육·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"을 "교육·보육·

제135조의 제목 "(교육·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)"을 "(교육·보육·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교육·과학"을 "교육·보육·과학"으로 한다.

②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 제목 "(교육·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)"을 "(교육·보육·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외의 부분 중 "교육·과학"을 "교육·보육·과학"으로 한다.

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"교육·과학"을 "교육·보육·과학"으로 한다.

제1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에 관한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으로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"교육·과학"을 "교육·보육·과학"으로 한다.

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가목 중 "유치원"을 "유치원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"으로 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교육의 자주	제1조(목적)
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	
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	
단체의 교육・과학・기술・체	교육·보육·과학·기술
<u>육</u>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	<u>· 체육</u>
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	
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	
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	
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교육・학예사무의 관장) 지	제2조(교육・학예사무의 관장)
방자치단체의 교육・과학・기	<u>교육·보육·과학</u>
술·체육 그 밖의 학예(이하	<u>·기술·체육</u>
"교육·학예"라 한다)에 관한	
사무는 <u>특별시·광역시 및 도</u>	<u>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</u>
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사무	<u>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</u>
로 한다.	
제20조(관장사무) 교육감은 교육	제20조(관장사무)
•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	
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8의2.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
9. ~ 17. (생 략)	9. ~ 17. (현행과 같음)
제35조(교육장의 분장 사무) 교육	제35조(교육장의 분장 사무)
장은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	

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	
를 위임받아 분장한다.	
1. <u>공·사립</u> 의 유치원·초등학	1. <u>어린이집, 공·사립</u>
교・중학교・고등공민학교 및	
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	
· 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